

협회장 직선제를 둘러싼 변호사법개정에 대한 우려

조용식 변호사, 본회 제2부회장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장 직선제 도입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협회장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협회제도 개선에 관한 제반 논의의 일환으로 줄곧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01. 2. 대구회 여동영 후보가 처음으로 협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서울과 지방회간 경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협회장 직선제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적도 있었다. 2007. 12.에는 협회장 직선제 조사연구 소위원회가 발족되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직선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변호사 전체의 대표이자 대한변협의 수장인 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개선·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협회장 선거제도는 협회장 선출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단순한 직역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 및 국가 여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의 재야법조단체이다.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최대 법률가단체이자 공적 기관으로서의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협회 운영 제도라는 관점에서 협회장 선거제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협회장 선거제도가 그것만을 따로 떼어내 논할 수 없고, 협회 제도 전반의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조건 특정한 협회장 선출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그동안의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 유무가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자 성공의 핵심요소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협회장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 변호사의 70%인 서울회 변호사들의 의사만 반영될 뿐, 타지방회 변호사들의 의사는 선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 회원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는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점이 간선제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따져 볼 일이다. 오히려 그 문제점은 현행협회의 임원등선거규칙 제3조 제①항의 “협회장은 총회에서 지방변호사회가 협회장 후보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칙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라는 규정과 서울회의 임원등선거규칙 제12조의2 제②항의 “협회장후보로 당선된 자는 변협대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변협대의원후보자를 선임직전까지 총회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지금까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위 규칙들을 적절히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문제를 키워 왔다면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 규칙들의 개정으로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려 없이 직선제만을 고집하게 되면, 선거의 과열, 연고주의 할거, 회장의 독단, 협회의 권한과 위상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협회장 직선제의 단점만이 현실화될 수 있다.

현행 협회장 선거방식을 폐지하고 협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반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제도 교체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감수할 만큼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이 크고 전반적인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는지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 또한 직선제 입법추진의 선결과제로서 첫째,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의 협회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둘째, 회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방안, 셋째,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직선제 입법추진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변협이 협회장 직선제를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방식과 그 배경을 보면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과거 대한변협은 2007. 12. 21. 「협회장 직선제 조사연구 보고서」를 각 지방변호사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수렴한 후 협회장 직선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겨우 1년 8개월여 경과한 지난 8월, 대한변협 신임 집행부는 제 19회 변호사대회에서 협회장 직선제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협회장 직선제, 바로알기’라는 홍보책자를 배포하였다. 또한 내년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없이 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 입법청원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협회장의 위상과 권한이 떨어지고, 협회가 지역관련 주요현안에 관하여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모든 책임은 비민주적인 협회장 간선제에 있으므로 협회장 직선제를 통하여 협회장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또한 2009년 9월 21일자 법률신문의 보도와 같이, 협회가 권한 강화 차원에서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비징수 및 예산편성권을 회수하고, 협회가 중앙집중식으로 회비를 모두 관리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배당하겠다는 발상을 숨김없이 밝히고 있고, 협회 주변에서는 서울회가 거대하고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몇 개로 분할하여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협회의 위 주장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단체의 사명을 실현하는데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회의 존립근거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즉, 변호사법 제66조에서는 지방변호사회의 독자적인 임원선임과 구성, 자산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79조에서는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중략...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의사결정과 예산권한을 가지며, 연합하여 협회의 회칙을 정하고, 협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협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협회장님의 발상은 거꾸로다.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예산과 의사결정권까지 모두 갖는 내용의 의결이나 회칙을 정하고,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시를 따르기만 하라는 것이다. 독자적 예산권 없는 자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협회로서는 서울변호사회의 분할 내지 지부화 등 권한 약화의 의도는 없고, 서울변호사회가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라고만 할 것인가? 또한 타 지방변호사회는 지방변호사회의 고유한 권능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협회의 이와 같은 의도에 대해 진정으로 찬성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치와 내부적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변호사회 조직은 언제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이러한 독단적인 직선제 입법추진에 대하여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협회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서울회가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는 80%의 회원들이 직선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는 사실도

전달하였다. 법률시장개방, 로스쿨 개원, 각종 직역침탈법안의 국회 상정 등으로 변호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직선제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지난 9. 14. 제4차 이사회에서 직선제 안건을 거수로 강행처리한 후, 10. 19.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위 이사회가 그 소집 및 진행 절차상 많은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요 일간지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대한변협의 파행적인 직선제 입법추진은 그대로 묵과하기에는 문제가 과히 심각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도입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협회장 직선제의 도입과 그에 관련된 제 문제는 100여 년의 변호사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차대한 일로서 전체 변호사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폭넓은 공감대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협회 발전 모델과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노력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설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통하여 회원들과 함께 가야 한다. 회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소홀히 하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협회장 직선제가 결코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끝으로, 협회장 직선제가 단순히 협회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자치를 말살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이는 저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회가 그러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난 이후에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 아니 협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한변협 및 각 지방회가 머리를 맞대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검토하고 치열하게 따져가면서, 논리와 합리성으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만이 진정 변호사 전체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대한변협과 지방회간에 격심한 논쟁이 야기되고, 서울과 지방간의 대결구도가 심화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어 정작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유사 이래 최대의 난국이라는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기에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